

Lab실 규정

□제정: 1982. 03. 01

□개정: 1989. 03. 01

□개정: 1998. 03. 01

□개정: 2007. 10. 06

제1장 총 칙

제1조(명칭) 이 Lab실은 수원대학교 Lab실(이하“본 교육실” 이라 한다)이라 한다.

제2조(목적) 본 교육실은 학생들의 효과적인 외국어 학습을 위해 다양한 시청각 기자재를 이용하여, 교육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최대의 교육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고, 이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업무) 본 교육실은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.

1. 시청각 자료의 구비, 보관 및 대여
2. 시청각 시설의 유지 관리
3. 기타 시청각 교육 목적 달성에 필요한 활동 업무

제4조(주요활동) 본 교육실의 주요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1. 1, 2학년 교양영어 회화수업
2. 어학원의 외국어 수업
3. 기타 Audio, Video 사용이 필요한 전공 및 교양 수업
4. 학생들에게 외국어 및 외국문화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많이 주기 위해 일정한 시간에 Lab실을 자유 공개
5. 회화, 외화 등의 자료 상영을 통한 외국어 교육을 실시
6. 교내에서 실시되는 TOEIC, TOEFL 등의 시험 진행을 돕는 일

제5조(위치) 본 Lab실은 수원대학교 내에 둔다.

제2장 조직 및 임원

제6조(조직) 본 Lab실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
1. 실장 1명
2. 실습 조교 1명

제7조(Lab실장) ① 본 교육실의 실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여 본 교육실을 대표하고 소관 사무를 총괄한다.

② 본 교육실의 실장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제8조(실습 조교) 실습 조교는 실장의 지시에 따라 본 교육실의 업무를 수행한다.

제3장 재 정

- 제9조(재정 및 회계연도) ① 본 교육실의 재정은 수원대학교의 학교비의 찬조금으로 충당한다.
② 실장은 매년 예산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③ 본 교육실의 회계연도는 3월1일부터 익년 2월말일까지로 한다.

제4장 시설 및 이용

- 제10조(LAB실) ① 본 교육실은 인문관100호(40석), 200호(60석), 300호(80석), 400호(80석), 402호(40석), 500호(80석)에 위치하며, 총 6실, 380석이다.
② 각 Lab실에는 주조종용 Master Console, Cassette Deck, VTR(NTSC방식), 학생용 Cassette Deck 또는 Booth AMP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, VIDEO상영 및 위성방송 수신이 가능토록 한다.
③ 402호 Lab실은 학생들이 영어학습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한다.
- 제11조(시설이용) 본 교육실의 시설, 기구 및 자료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전 실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시간 배정을 받는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198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